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2.28.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독일의 식품 접촉 플라스틱 규제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식품 접촉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규제

독일은 포장재 및 용기에 관해서 유럽연합의 조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포장재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포장재 폐기물과 포장재의 재활용에 관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 플라스틱세를 시행하였으며, 주로 일회용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에 대해 연간 부과금을 도입하였습니다. 더불어 식품관련 LFGB 등이 적용됩니다.

포장재법 중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시행

2019년 1월1일부터 도입된 신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스텝, 수입기업에게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주요 규정과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3일: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
- 2022년 1월 1일: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예치금)제 적용 (판트: Pfand)
- 2022년 7월 1일: 포장의 등록 범위가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레이블,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
- 2022년 7월 1일: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 2023년 1월 1일: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도 함께 제공 의무(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
- 2024년 1월 1일: 우유 및 유제품 포장 보증금(예치금)제(판트: Pfand) 적용
- 2024년 7월 3일: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일회용 PET 병의 최소 25%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합니다. 2025년의 경우 25%이며, 2030년 1월 1일부터는 3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사용 가능 요건은 배달 서비스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도 확대되며, 레스토랑에서는 일회용 식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2025년초부터 EU 전역에서 유해 플라스틱(BPA)이 포함된 병, 캔, 포장재가 금지됩니다.

독일의 포장재 및 용기에 대한 규정 : VerpackG

독일은 포장재 및 용기에 관해서 유럽연합의 규제 및 포장재 폐기물과 포장재의 재활용에 관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독일은 포장재 및 폐기물 방지 조례(Verordnung ueber die Vermeidung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aellen, VerpackV)를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포장재 법(Verpackungsgesetz, VerpackG)을 도입하였습니다. 동 포장재 법은 소비재의 생산자, 수입자, 공급자가 인가된 재활용 업체와 포장재의 재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자는 포장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중앙 관청(Zentrale Stelle)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제조자(manufacturer)는 등록 번호,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 종류와 부피, 생산자에 의해서 계약된 포장 계획의 이름, 재활용 업체/시스템과 맺은 계약의 지속 기간 정보 등을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함.
- 제조자(manufacturer)는 생산자, 수입자, 공급자가 포함되며, 수출품의 유통 채널에 따라서 외국의 수출자도 중앙 관청에 등록하고 포장재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음.

「포장재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금지되고(제30a조. 위반 시 몰수도 가능),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되며(제31조. 위반 시 최대 10만유로의 과태료),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

▶ 독일의 포장재법 원문

- 세계법제정보센터 : 독일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50277&AST_SEQ=69

독일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령

독일은 2021년 7월 3일부터 빨대, 접시와 식기류, 포장 용기, 스티로폼으로 만든 음료 용기 및 컵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입업체에 해당 상품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에 적용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 플라스틱세를 시행, 주로 일회용 식품 포장용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연간 부과금을 도입하였습니다.

▶ 독일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

- 세계법제정보센터 : 독일 일회용플라스틱금지령(Einwegkunststoffverbotsverordnung)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A=A&selectLgsllCls=lobject%20HTMLInputElement&CTS_SEQ=50276&AST_SEQ=69

▶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und Futtermittelgesetzbuch/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



LFGB는 독일의 식품용품법으로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로 독일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과 관련된 용품은 LFGB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적합성 시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임받은 기관의 시험 보고 증명서를 통해 독일 시장 내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 독일 시장의 모든 식품, 그리고 식품과 관련이 있는 일용품은 테스트를 통해서 독일<식품과 일용품법>의 제 30조(LFGB 30 Verbote zum Schutz der Gesundheit)와 31조(LFGB 31 Übergang von Stoffen auf Lebensmittel)에 부합되어야 하고, LFGB테스트, 즉 “화학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 보고증명이 있어야만 독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유럽 식품관련 규칙인 EC Regulation 1935/2004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LFGB 대상 제품군

- 음식용 기기 (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 식품 용기 (예: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기)
- 조리용 기구 (냄비, 도마 등)
- 식사 용품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
- 직물, 패션 소품
-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한 장난감
-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 화장품
- 담배 등

▶ 인증마크 획득 절차

상담 → 견적 → 신청자승인 → 계약 → 샘플 테스트 → 시험성적서(test report)발행 → LFGB 인증서 발행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문의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 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독일 KOTRA 뮌헨 무역관 : <https://www.kotra.or.kr/munich/subList/40000000341>

TEL : (49-89) 2424-2630 / FAX: (49-89) 2424-2639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https://www.kotra.or.kr/frankfurt/subList/40000001217>

TEL : 49-(0)69-242-9920 / FAX: 49-(0)69-25-3589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 <https://www.kotra.or.kr/hamburg/subList/40000001249>

TEL : (49-40) 3405-740 / FAX: (49-40) 3405-7474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khc/selectOvrskhcDetail.do?deptCd=9500>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ITA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EL : 1566-5114)

<https://www.kita.net/expertHub/main.do>

※ 자료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독일, 2025년 변동 사항 짚고 넘어가기(2025-01-03)
<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Vg0bv3UUfphG.do>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제 18호 2022.12)
<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29502/1/E03e-20-e18-2.pdf>
- VerpackG
<https://verpackungsgesetz-info.de/en/>
- 세계법제정보센터 : 독일 일회용플라스틱금지령(Einwegkunststoffverbotsverordnung)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lectLgsCls={object%20HTMLInputElement}&CTS_SEQ=50276&AST_SEQ=69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독일 LFGB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InfoDetail.do?fieldSeq=2548&hsCode=0000.00&pageIndex=1>
- TUV Rheinland
<https://www.tuv.com/content-media-files/korea/pdfs/tuv-rheinland-food-contact-testing-productsheet-ko.pdf>
- KCI : 독일 식품안전 법제 및 집행체계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1177>
- 세계법제정보센터 :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각국의 규정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CTS_SEQ=50275&AST_SEQ=3891&nationReadYn=Y&ETC=2&searchNtnl=WD
- KOTRA 해외시장뉴스 : 독일 플라스틱 포장용품 시장 동향(2024-07-29)
<https://me2.do/5CWecs8l>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 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